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1차 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지원청 설치원칙 변경 등〉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54호)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54호)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71호)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52호)

2024. 11.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개요 및 조문대비	3
2. 입법 배경 (교육지원청 설치 및 운영)	12
3. 조문별 검토의견	14
(1) 교육지원청의 설치 등(안 제34조)	14
(2) 교육지원청의 분장사무(안 제35조)	25
(3) 부칙	26

I . 제안경위

【정성호의원안】

1. 발 의 자 : 정성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5.
3. 회부연월일 : 2024. 9. 26.

【김용태의원안】

1. 발 의 자 : 김용태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26.
3. 회부연월일 : 2024. 9. 27.

【추미애의원안】

1. 발 의 자 : 추미애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30.
3. 회부연월일 : 2024. 10. 2.

【민형배의원안】

1. 발 의 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17.

3. 회부연월일 : 2024. 10.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성호의원안】

현행법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김용태의원안】

최근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호).

【추미애의원안】

최근 신도시 지역의 학생 수와 학교 수 증가에 따른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요구가 커지고 있음.

하지만, 지역의 특색, 효율적인 행정 운영, 책임성 강화 등 교육정책

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힘든 구조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시·도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분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 지역의 교육행정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민형배의원안】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등을 시·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규정하려 합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과 행정의 실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미 교육부도 지난 9월 26일, 설치 등의 권한의 지방이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교육부장관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명칭과 위치 등을 정합니다. 그동안 장관에게 주어진 권한의 실효성 부족이 누차 지적됐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따른 교육서비스 급증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교육현장 밀접지원에 한계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최근에는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등 현안 신속대응력 부족도 제기됩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 문제

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경기 화성, 오산지역입니다. 과밀학급과 원거리통학 등 현안해결에 별도 교육지원청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교육청은 찬성하는데, 교육부가 적극적이지 않아 번번이 설치가 좌절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지역의 오랜 숙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명칭과 조직·운영 등을 시·도 교육감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주민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교육현장 수요에 밀착지원 강화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4조 및 제35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별 개요 및 조문대비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강화등을 목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설치등¹⁾ 기준 및 절차, 관할구역·명칭 등 규정방식과 함께 분장사무를 변경하는 내용임.

<현행 및 개정안별 주요내용 개요>

구분 (교육지원청)	현행	정성호 의원안	김용태 의원안	추미애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설치등 기준	1개 또는 2개 이상 시군자치구 관할구역	1개 시군자치구 관할원칙 (예외 인정)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감)
절차	-	지방의회 의견제시 가능 (설치와 관할구역 조정)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등 의견 (설치폐지통합 분리시)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등 의견 (변경사항)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등 의견 (설치폐지 통합분리시)
규정방식	대통령령 - 관할구역과 명칭(②항), - 조직과 운영 (④항)	시도조례 - 관할구역, 명칭	시도조례 - 관할구역, 명칭, 위치	시도조례 - 관할구역, 명칭, 위치	시도조례 - 관할구역, 명칭 - 조직, 운영
분장사무	지도감독		지도감독 및 지원		지도감독 및 지원

1) 설치, 폐지, 통합, 분리 등

<개정안별 조문대비표_교육지원청의 설치 등 (안 제34조)>

현행	정성호의원안	김용태의원안	추미애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u><단서 신설></u>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_____ _____ _____ _____ <u>—1개—</u> _____ _____ _____ _____ ----. 다만, <u>학교 교육의</u> <u>효과적인 지</u> <u>원 및 교육지</u> <u>원청의 효율</u> <u>적인 운영을</u> <u>위하여 필요</u> <u>한 경우에는</u> <u>2개 이상의</u> <u>시·군 및 자</u> <u>치구를 관할</u> <u>구역으로 하</u> <u>는 교육지원</u> <u>청을 둘 수</u> <u>있다.</u>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_____

---명칭은 시·도의 조례로-----.

③ 시·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그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② _____명칭, 위치는 조례-----.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다. 이때 관계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_____명칭, 위치는 시·도의 조례-----.

③ 교육감은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_____명칭은 시·도조례로-----.

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할 수 있다.

③(생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한다.				⑤ _____ _____ _____ _____ --- <u>시·도조례</u> 로_____.

<개정안별 조문대비표_교육지원청의 분장사무 (안 제35조)>

현행	김용태 의원안	민형배의원안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u>지도·감독</u> 2. (생략)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_____ _____ _____ _____. 1.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지원 및 지도·감독</u> 2. (현행과 같음)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_____ _____ _____ _____. 1.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지원과 지도·감독</u> 2. (현행과 같음)

2. 입법 배경 (교육지원청 설치 및 운영)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²⁾.

2024년 10월 현재 교육지원청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28개 시·군·자치구(제주 행정시 포함)에 총 176개의 교육지원청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37개는 복수의 구역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에 해당함. 즉, 52개 시·군·자치구에는 별도의 교육지원청이 없고 인근에 설치된 통합교육지원청에서 동시에 관할하고 있음.³⁾

<교육지원청 설치 현황(2024년 10월 현재)>

관할구역		교육지원청	대상 지역(시·군·자치구)(개)
단일 관할		139개	경기 19, 인천 2, 강원 16, 대구 2, 충북 9, 충남 13, 전북 14, 전남 22, 경북 22, 경남 18, 제주 2
복수 관할	2개	24개	서울 8, 경기 6, 인천 2, 대구 2,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 각 1
	3개	11개	서울 3, 부산 4, 대구·광주·대전·울산 각 1
	4개	2개	인천 1, 부산 1
	소계	37개	* 수도권(54.1%): 20(서울11, 경기6, 인천3), 수도권 외(45.9%): 17(광역시14, 도3)
총계		176개	* 통합교육지원청의 비율 - 수도권 : 서울 100%(11/11), 경기 24%(6/25), 인천 60%(3/5) - 수도권 외 : 광역시 93.3%(14/15), 도 0.25%(3/120)

자료 :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직접 작성

2)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참고자료 1】 : 전체 교육지원청(176개) 설치 및 교육행정 규모 현황

통합교육지원청은 주로 학생·학교 수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교육청별 통합교육지원청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100%(11개 중 11개), 경기도는 24%(25개 중 6개), 인천은 60%(5개 중 3개)이고, 광역시의 경우 93%(15개 중 14개)이나 도의 경우 0.25%(120개 중 3개)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면 37개 통합교육지원청 중 수도권에 20개(서울 11, 경기 6, 인천 3), 수도권 외에 17개(광역시 14, 도 3)임.

최근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24.9.27.)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학교현장의 교육서비스 수요에 지역단위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①학교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②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지방 이양, ③교육지원청 국·과등 기구설치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임. 특히, 효율적인 학교현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의 신설·폐지·통합·분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임.

< 교육부에 따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기준 및 절차(안) >

구 분		현 행	⇒	개 선
설치·폐지, 통합·분리	① 기준	부재		원칙만 제시
	② 절차	부재		의견수렴 절차 명시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대통령령으로 명시		조례로 정함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

3. 조문별 검토의견

(1) 교육지원청의 설치 등(안 제34조)

1) 교육지원청 설치원칙(안 제34조제1항 및 제3항)

<개정안별 교육지원청 설치원칙 비교>

구분	현행	정성호 의원안	김용태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제1항	1개 또는 2개 이상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	1개 시군자치구 관할원칙 (예외 인정)		
제3항 전단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폐지·통합·분리 가능 (교육감 주체 명시)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폐지·통합·분리 가능 (교육감 주체)

① 1개 시군구 관할원칙 명시(정성호의원안)

개정안(정성호의원안)은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군·자치구마다 설치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해당 시·도의 조례를 통해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지역 간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최근 학교폭력에 이어 교권침해 대응 업무도 일선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고,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필요성, 유보통합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새로운 교육정책 수요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강화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시·군·자치구마다 교육지원청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 특성과 교육수요 변화 등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써 통합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것은 그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적 대응은 물론, 지방교육자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 생각됨.

다만, 시·군·자치구마다 1개의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법률로써 일률적인 설치원칙을 명시하는 경우, 지역교육청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 교육청의 자율성을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2019.8.20. 개정, 2020.3.1. 시행)을 통해 일선 학교에 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었고, 2023. 9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2023.9.27. 개정, 2024. 3.28. 시행) 기존 학교교원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원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등 교권침해 대응 업무 역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됨.

② 교육감의 교육지원청 설치등 권한 명시(김용태, 민형배의원안)

개정안(김용태의원안 및 민형배의원안)은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 및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통합·분리(이하 “설치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⁶⁾ 통합교육지원청 설치가 교육부장관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설치등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명시하는 내용임.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설치등 원칙(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법률로서 제시하며, 교육지원청의 설치등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특성과 교육수요 변화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존중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5)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은 김용태의원안에만 규정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교육지원청은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지역별로 학교 및 학생수등 교육수요를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감이 학교교육의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다만, 이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을 규정하는 제34조제2항(현행 대통령령을 조례로 변경하는 개정안)과도 연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통합·분리”를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과 비교시⁷⁾ “나누거나 합칠 때”로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⁸⁾.

7) 지방자치법은 종래 “폐지·분합(廢置・分合)”으로 규정하였다가 2007년 전부개정시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취지에 따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로 변경되었음.

8) 다만, “폐지·분합”과 달리 “분리·통합”은 법령정비 대상은 아님.
「알기 쉬운 법률용어 2020」(국회사무처 법제실)에서도 “폐지·분합”을 정비대상 용어로, “폐지·설치·분리·통합”으로 순화할 것을 정하고 있음.

2)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등을 조례로 위임(안 제34조제2항 등)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교육지원청 설치 등 변경 사항,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3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개정안별 교육지원청 관련 규정>

현행		정성호 의원안	김용태 의원안 추미애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제2항 (관할구역과 명칭)	대통령령	시·도 조례	조례로 정함 (위치 추가)	시·도 조례
제3항(교육지원청 설치 등/변경사항)	—		시도 조례	시도 조례
제4항(조직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시·도 조례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⁹⁾는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제2항),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¹⁰⁾ [별표 2]에서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도 교육청에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인구 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지원청의 국·과(담당관)·센터 설치기준과 국장·과장(담당관)·센터장의 직급기준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설치 및 사무분장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¹¹⁾¹²⁾.

<교육지원청의 설치 및 조직 등에 관한 규정 체계>

법률(제34조)	대통령령	비 고
제2항 (관할구역과 명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2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제4항 (조직과 운영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12조, 별표3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11)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지원청 국·과(담당관)·센터의 설치 및 국장·과장(담당관)·센터장의 사무 분장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국·과(담당관)·센터의 설치기준 및 국장·과장(담당관)·센터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국·과의 명칭은 국은 지원관으로, 과는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영을 적용할 때 국·과로 본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중 일부(*표 형식 일부 수정 작성)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설치기준			국	과(담당관)·센터
인구 수		학생 수		
100만명 이상	또는	10만명 이상	3국	
50만명 이상	이고	5만명 이상	2국	
30만명 이상	이고	3만명 이상		4과(담당관), 2센터
15만명 이상	이고	2만명 이상		3과(담당관), 2센터
10만명 이상	이고	1만명 이상		2과(담당관), 2센터
10만명 미만	또는	1만명 미만		2과(담당관), 1센터

그밖에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교육지원청(하급교육 행정기관)과 관련된 사항의 규정방식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배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도록 하고¹³⁾, 사무의 위임·위탁¹⁴⁾ 등은 교육감이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¹⁵⁾ 하부 행정기구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13) 제33조(공무원의 배치) ①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로써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제30조제5항의 보조기관과 제32조의 교육기관 및 제34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14)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15)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명칭에 대해서는

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의 경우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5조)

②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경우에는 이를 폐지·설치·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자치법」 제7조)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중 관할 구역 경계변경(이하 “경계변경”이라 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경계변경의 절차는 제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지방자치법」 제125조1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데,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에서 상세한 기준을 두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법」 제134조18)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음.

이처럼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한 행정기구의 설치에 대해 ① 시·도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② 자치구가 아닌 구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6)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7)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68조·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8) 「지방자치법」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그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체계>

구 분	행정기구의 설치	비 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자치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사무관장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① 관할구역과 명칭(5개안 동일¹⁹⁾), ② 교육지원청 설치·폐지·통합·분리 등 변경사항(김용태, 추미애, 민형배 의원안²⁰⁾) ③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민형배의원안)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교육행정 수요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지방교육자치가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시·도별 교육환경 및 재정여건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 교육지원청 신설 및 통·폐합에 따른 시·도간 교육행정서비스의 질 격차 발생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고²¹⁾,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법」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19) 김용태의원안 및 추미애의원안은 “위치”도 명시

20) 김용태의원안 및 추미애의원안은 “교육지원청의 변경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함

21) 구체적으로 교육지원청 신설·분리시 조직 비대화 및 예산부담 우려가, 폐지·통합시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 대응 어려움 및 교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과의 비교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²²⁾.

참고로, 교육부는 관할구역과 명칭은 조례로 정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조직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3) 교육지원청 설치등 의견수렴 절차(안 34조제3항(후단))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분할·병합 등의 경우 주민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안 제34조 제3항).

<개정안별 의견수렴 절차 관련 규정>

현 행	정성호 의원안	김용태 의원안	추미애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없음	설치와 관할구역 조정	설치·폐지· 분리·통합	변경사항	설치·폐지· 분리·통합
	지방의회 의견제시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의견수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의견수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의견수렴
	교육부장관, 교육감	결과를 교육부장관 보고	결과를 교육부장관 보고	

개정안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분할·병합 등 교육여건 및 학교지

22) ‘조례’로 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등 규정방식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원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설치·폐지·합병·분리 및 구역·명칭 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음²³⁾²⁴⁾.

다만,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교육감이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로 정하고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을, “통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²⁵⁾.

개정안과 같이 교육지원청 설치 등을 교육감의 권한으로 변경한다면, 이와 상응하게 그 결과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참고로 법제처의 ‘지방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계획’에 따라 일괄개정 추진되는 81개 법률안 및 65개 하위법령²⁶⁾에 따르면, 자치입

23) 「지방자치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경계변경을 할 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할 때(한자 명칭을 변경할 때를 포함한다)

24) 다만, 이는 하부행정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으로 구별할 필요는 있음.

25)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보고’는 행정용어로서 “같은 부내의 상급기관이 지시 요청한 근거에 따라 하급기관이 그 내용이나 결과를 문서나 구두로 알리는 행위”로 상하관계에서 하급자(기관)가 상급자(기관)에게 쓰는 용어인 반면, ‘통보’는 ‘통지보고’를 줄인 행정용어로서 “같은 부서의 동급기관끼리 행정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그 내용이나 결과를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주는 행위”로 평등한 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26)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① **자치입법권 강화** 측면에서 지방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것과 ② **지방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지방 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 또는 보고를 사후 통보, 의견 제출 등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에 첨부.

법권 강화 측면에서 지방사무에 관한 사항의 중앙부처에 대한 보고를 사후 통보 등으로 전환하여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2) 교육지원청의 분장사무(안 제35조)

개정안(김용태의원안 및 민형배의원안) 제35조는 교육장의 분장사무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와 감독 외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임(안 제35조제1호).

현행법상 교육장 분장사무에 관할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만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지원”을 추가하여 학교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최근 교권보호와 학교폭력 사안 등 학교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 지원의 중추로서 교육지원청의 기능²⁷⁾과 명칭²⁸⁾ 등을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27) “교육지원청 학교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발표”, 교육부, 2024.9.26.

28) 당초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명칭 변경하였음
[시행 2013. 12. 30.] [법률 제12128호, 2013. 12. 30., 일부개정]

(3) 부 칙

개정안별로 시행일이 공포한 날(김용태, 추미애의원안) 및 공포 후 6개월(정성호, 민형배의원안)으로 구분됨.

정성호 의원안	김용태 의원안	추미애 의원안	민형배 의원안
공포 후 6개월	공포한 날	공포한 날	공포 후 6개월

시행일은 기본적으로 정책적 판단사항으로 권리 제한(의무 부과) 여부, 긴급히 시행할 필요성, 하위법령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²⁹⁾. 만약,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 등을 정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공포일부터 3개월 상당의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85

29)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의2(법령의 시행유예기간)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1. 전체 교육지원청(176개) 설치 및 교육행정 규모 현황

* 통계기준 : 인구수('24. 3. 31. 기준, 행정안전부, 인구수 통계), 학교·학생 수('24. 4. 1. 기준, 교육부, 2024교육통계)

※ “음영” 표시는 37개의 통합교육지원청임

(단위 :명, 개)

연번	시·도	교육지원청명	관할구역	인구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	서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구	341,987	73	27,045	2,289
	서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종랑구	381,966	79	27,084	2,370
2	서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서대문구	305,986	62	24,917	2,144
	서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마포구	363,645	74	27,960	2,576
	서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은평구	466,007	106	41,913	3,706
3	서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영등포구	375,148	84	27,366	2,302
	서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구로구	391,387	87	34,916	3,188
	서울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금천구	227,160	51	15,967	1,501
4	서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도봉구	306,346	74	25,494	2,250
	서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노원구	497,064	156	56,923	5,188
5	서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종로구	139,498	59	15,548	1,887
	서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중구	121,602	46	13,109	1,321
	서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용산구	209,849	47	14,101	1,530
6	서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강남구	554,280	120	64,972	5,068
	서울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초구	407,840	77	43,037	3,392
7	서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동구	461,367	97	47,683	3,804
	서울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송파구	653,736	138	64,473	5,431
8	서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구	561,386	131	49,961	4,362
	서울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양천구	434,528	102	50,954	3,961
9	서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악구	481,958	88	27,965	2,757
	서울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구	378,649	74	27,569	2,434
10	서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성동구	276,964	67	18,808	1,858
	서울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광진구	335,105	68	28,858	2,304
11	서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성북구	424,881	106	37,685	3,330
	서울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구	286,400	55	20,170	1,851
12	부산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구	103,525	34	9,110	897
	부산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사하구	295,755	96	27,875	2,449
	부산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영도구	106,108	39	8,088	917

연번	시·도	교육지원청명	관할구역	인구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부산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중구	38,463	12	2,907	317
13	부산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남구	255,470	77	27,246	2,478
	부산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동구	87,275	24	6,867	684
	부산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진구	361,264	111	34,516	3,047
14	부산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동래구	269,036	79	32,544	2,520
	부산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금정구	213,976	68	22,055	1,970
	부산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연제구	211,435	47	17,575	1,390
15	부산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북구	271,932	89	24,960	2,201
	부산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사상구	201,853	66	14,319	1,447
	부산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강서구	141,775	60	23,987	2,030
16	부산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수영구	173,738	40	12,638	1,092
	부산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구	378,063	97	39,627	3,235
	부산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기장군	177,624	73	24,420	1,988
17	대구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구	90,561	31	10,879	904
	대구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동구	341,918	108	32,165	2,871
	대구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수성구	408,943	120	54,607	4,400
18	대구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구	164,457	49	12,519	1,248
	대구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북구	416,725	142	45,984	4,082
19	대구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남구	138,140	40	12,301	1,351
	대구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달서구	525,600	180	63,710	5,596
20	대구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	달성군	260,800	107	36,347	3,180
21	인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평구	22,818	21	886	206
22	인천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양구	495,215	150	47,929	4,043
	인천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구	279,902	89	25,784	2,282
23	인천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중구	628,811	184	81,902	5,812
	인천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미추홀구	162,369	60	24,867	2,148
	인천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동구	407,307	91	35,602	2,975
	인천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옹진군	59,073	27	6,510	598
24	인천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연수구	20,212	26	937	230
	인천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남동구	393,825	119	57,439	4,221
25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강화군	490,390	142	56,434	4,441
26	광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동구	68,941	55	5,228	729
	광주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북구	106,855	39	9,403	920
27	광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구	421,968	184	52,659	4,725
	광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남구	282,898	105	30,398	2,585

연번	시·도	교육지원청명	관할구역	인구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광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구	209,022	98	33,038	2,857
28	대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중구	395,031	171	58,054	4,937
	대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동구	223,076	93	26,350	2,586
	대전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대덕구	216,872	79	20,370	2,120
29	대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서구	169,899	69	16,560	1,781
	대전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성구	464,115	164	56,087	4,912
30	울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울주군	367,727	153	49,261	4,361
	울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남구	219,112	103	25,789	2,351
31	울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중구	305,615	105	35,589	2,911
	울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동구	208,044	76	23,286	1,985
	울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북구	151,648	58	21,342	1,677
32	경기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안산시	216,917	91	33,788	2,698
33	경기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	626,954	195	69,880	5,945
34	경기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부천시	519,109	174	68,676	5,331
35	경기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시	776,349	240	77,865	6,749
	경기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시	87,875	39	8,830	836
36	경기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	275,284	102	33,025	2,613
	경기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남양주시	186,261	59	19,269	1,634
37	경기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평택시	732,810	235	91,671	7,152
38	경기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	592,800	228	75,243	6,008
	경기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과천시	546,384	159	59,451	4,992
39	경기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군포시	82,860	22	10,390	812
	경기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의왕시	259,798	88	26,542	2,316
40	경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오산시	157,141	45	14,462	1,286
	경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화성시	232,965	93	33,973	2,635
41	경기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	949,912	359	144,027	10,707
	경기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광주시	329,196	87	41,001	3,120
42	경기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	392,381	102	40,231	3,141
43	경기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성남시	1,196,818	379	142,912	11,753
44	경기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시	919,464	275	97,037	8,483
45	경기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시	462,466	135	47,789	4,022
46	경기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여주시	279,231	91	31,985	2,785
47	경기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파주시	114,289	78	10,864	1,206
48	경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고양시	503,547	199	65,442	5,210
49	경기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연천군	1,071,339	328	116,289	10,062

연번	시·도	교육지원청명	관할구역	인구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50	경기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포천시	41,236	35	3,228	496
51	경기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가평군	142,542	77	11,811	1,351
52	경기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양평군	62,245	39	5,210	609
53	경기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이천시	125,722	68	10,944	1,216
54	경기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	221,366	104	25,996	2,339
55	경기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안성시	1,078,150	349	135,654	10,425
56	경기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김포시	190,425	102	21,512	1,937
57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춘천시	485,532	179	72,385	5,298
58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원주시	286,719	122	31,972	3,024
59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강릉시	361,223	164	42,577	3,853
6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속초시	208,800	96	19,968	1,993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양양군	81,626	28	8,107	756
6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동해교육지원청	동해시	27,644	32	1,791	285
62	강원	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	태백시	88,181	43	9,886	956
63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삼척시	38,354	33	3,642	518
64	강원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교육지원청	홍천군	62,522	52	5,303	688
65	강원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교육지원청	횡성군	67,278	69	5,392	818
66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영월군	46,194	47	3,724	557
67	강원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평창군	37,184	43	2,753	498
68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정선교육지원청	정선군	40,533	46	2,642	468
69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철원군	33,990	47	2,478	468
7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화천교육지원청	화천군	41,113	37	3,714	526
7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교육지원청	양구군	22,830	32	2,019	341
72	강원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인제군	21,023	29	2,187	341
73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고성군	31,764	35	2,732	402
74	충북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	충주시	27,220	31	1,783	328
75	충북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제천시	207,550	110	21,888	2,237
76	충북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청주시	130,200	76	12,679	1,310
77	충북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보은군	851,430	312	105,398	9,062
78	충북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옥천군	30,884	39	2,232	398
79	충북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영동군	48,754	36	3,815	504
80	충북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진천군	43,975	39	3,136	471
81	충북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괴산군	86,370	47	11,121	1,116
	충북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증평군	36,319	39	1,921	375
82	충북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음성군	37,400	15	4,010	392

연번	시·도	교육지원청명	관할구역	인구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83	충북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단양군	90,542	60	8,777	1,062
84	충남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천안시	27,620	28	1,798	308
85	충남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주시	657,089	248	86,980	6,967
86	충남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아산시	102,138	86	9,744	1,314
87	충남	충청남도보령교육지원청	보령시	349,588	150	52,140	4,286
88	충남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서산시	94,994	79	8,447	1,085
89	충남	충청남도금산교육지원청	금산군	175,650	94	20,853	1,941
90	충남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시	50,129	44	3,833	575
	충남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	계룡시	109,865	89	11,363	1,506
91	충남	충청남도부여교육지원청	부여군	46,724	17	6,693	543
92	충남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서천군	60,561	65	4,302	733
93	충남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청양군	48,901	52	3,578	640
94	충남	충청남도홍성교육지원청	홍성군	30,023	31	1,917	355
95	충남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	예산군	98,349	65	11,377	1,193
96	충남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	태안군	77,960	67	7,442	997
97	충남	충청남도당진교육지원청	당진시	60,508	48	4,215	612
98	전북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전주시	170,266	92	20,772	1,887
99	전북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군산시	640,772	255	84,061	7,330
100	전북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익산시	259,000	150	30,916	2,917
101	전북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정읍시	268,678	180	29,859	3,188
102	전북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	남원시	103,204	105	10,059	1,390
103	전북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	김제시	76,350	77	7,134	1,043
104	전북	전라북도완주교육지원청	완주군	81,242	94	6,761	1,063
105	전북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진안군	98,656	87	9,977	1,298
106	전북	전라북도무주교육지원청	무주군	24,468	39	1,660	393
107	전북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장수군	23,167	30	1,866	345
108	전북	전라북도임실교육지원청	임실군	20,843	28	1,611	334
109	전북	전라북도순창교육지원청	순창군	25,838	41	1,518	370
110	전북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고창군	26,805	40	2,140	419
111	전북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부안군	51,538	61	4,650	730
112	전남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순천시	48,815	57	3,786	659
113	전남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나주시	277,539	133	35,210	3,333
114	전남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여주시	117,103	82	14,377	1,744
115	전남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광양시	270,786	153	29,787	3,041
116	전남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목포시	152,779	91	18,320	1,867

연번	시·도	교육지원청명	관할구역	인구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17	전남	전라남도담양교육지원청	담양군	213,376	111	29,941	2,681
118	전남	전라남도곡성교육지원청	곡성군	45,059	41	3,434	534
119	전남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구례군	26,768	23	1,922	335
120	전남	전라남도고흥교육지원청	고흥군	24,196	28	1,670	311
121	전남	전라남도보성교육지원청	보성군	60,871	55	3,391	608
122	전남	전라남도화순교육지원청	화순군	37,520	49	2,673	534
123	전남	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	장흥군	60,966	49	5,360	711
124	전남	전라남도강진교육지원청	강진군	34,810	42	2,544	449
125	전남	전라남도해남교육지원청	해남군	32,602	41	2,668	524
126	전남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영암군	64,096	54	4,947	711
127	전남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	무안군	52,129	51	4,728	758
128	전남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함평군	90,097	56	11,230	1,136
129	전남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	영광군	30,405	35	2,333	452
130	전남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장성군	51,552	45	4,412	622
131	전남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완도군	42,449	39	3,620	552
132	전남	전라남도진도교육지원청	진도군	46,291	63	3,999	683
133	전남	전라남도신안교육지원청	신안군	28,860	35	2,169	379
134	경북	경상북도안동교육지원청	안동시	38,181	58	1,690	499
135	경북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	경주시	152,733	98	18,034	1,871
136	경북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김천시	246,371	137	25,087	2,551
137	경북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구미시	136,769	87	15,368	1,571
138	경북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영주시	405,189	197	59,117	5,129
139	경북	경상북도영천교육지원청	영천시	100,072	62	9,834	1,006
140	경북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상주시	100,195	64	7,693	954
141	경북	경상북도문경교육지원청	문경시	93,418	91	8,772	1,190
142	경북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경산시	68,232	54	5,890	772
143	경북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포항시	266,075	115	28,801	2,606
144	경북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	군위군	492,342	244	58,305	5,218
145	경북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의성군	49,696	48	2,314	461
146	경북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청송군	23,950	29	1,204	282
147	경북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영양군	15,553	20	934	201
148	경북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영덕군	33,782	30	2,030	334
149	경북	경상북도청도교육지원청	청도군	41,144	35	2,849	387
150	경북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	고령군	30,050	24	1,798	289
151	경북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	성주군	41,971	36	2,347	398

연번	시·도	교육지원청명	관할구역	인구수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152	경북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칠곡군	109,475	69	13,062	1,353
153	경북	경상북도예천교육지원청	예천군	55,127	39	4,438	584
154	경북	경상북도봉화교육지원청	봉화군	29,356	38	1,850	350
155	경북	경상북도울진교육지원청	울진군	46,390	40	3,816	537
156	경북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울릉군	9,070	11	472	94
157	경남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창원시	1,005,519	421	121,266	10,408
158	경남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진주시	340,037	143	42,054	3,820
159	경남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통영시	119,767	64	14,376	1,303
160	경남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사천시	108,943	50	11,934	1,137
161	경남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김해시	532,619	205	73,330	5,916
162	경남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밀양시	101,649	67	9,006	1,046
163	경남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거제시	233,181	126	36,763	2,964
164	경남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양산시	355,515	140	49,343	3,872
165	경남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의령군	25,351	31	1,552	345
166	경남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함안군	59,804	47	6,151	703
167	경남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창녕군	56,848	52	5,010	679
168	경남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고성군	49,048	49	4,326	640
169	경남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남해군	40,479	40	3,320	528
170	경남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하동군	41,326	43	2,386	486
171	경남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산청군	33,657	35	2,096	407
172	경남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함양군	36,645	35	2,772	439
173	경남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거창군	60,030	50	6,657	788
174	경남	경상남도합천교육지원청	합천군	40,956	47	2,320	488
17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교육지원청	제주시	489,939	196	64,331	5,244
17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교육지원청	서귀포시	183,164	116	19,312	2,013

자료: 교육부

2. 통합교육지원청 현황(37개)

※ 관할구역 중 “볼드체(+음영) 표시”는 통합교육지원청이 소재한 지역임
(단위: 개교, 명)

지역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단위학교 직원 수	교육지원청 직원 수	인구 수		
시	서울	동부	동대문구, 중랑구	152	54,129	4,659	488	119	723,953	
		서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242	94,790	8,426	907	128	1,135,638	
		남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222	78,839	7,191	694	126	993,695	
		북부	도봉구, 노원구	230	82,417	7,438	816	123	803,410	
		중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152	42,758	4,738	675	114	470,949	
		강남서초	강남구, 서초구	197	108,009	8,460	766	134	962,120	
		강동송파	강동구, 송파구	235	112,156	9,235	848	131	1,115,103	
		강서양천	강서구, 양천구	233	100,915	8,323	794	131	995,914	
		동작관악	관악구, 동작구	162	55,534	5,191	573	118	860,607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135	47,666	4,162	444	116	612,069	
		성북강북	성북구, 강북구	161	57,855	5,181	570	115	711,281	
	부산	서부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181	47,980	4,580	542	118	543,851	
		남부	남구, 동구, 부산진구	212	68,629	6,209	668	117	704,009	
		동래	동래구, 금정구, 연제구	194	72,174	5,880	625	116	694,447	
		북부	북구, 사상구, 강서구	215	63,266	5,678	605	116	615,560	
		해운대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210	76,685	6,315	637	121	729,425	
	대구	동부	중구, 동구, 수성구	259	97,651	8,175	708	121	841,422	
		서부	서구, 북구	191	58,503	5,330	475	108	581,182	
		남부	남구, 달서구	220	76,011	6,947	612	108	663,740	
	인천	북부	부평구, 계양구	239	73,713	6,325	591	107	775,117	
		남부	중구, 미추홀구, 동구, 옹진군	204	67,916	5,951	528	111	648,961	
		동부	연수구, 남동구	261	113,873	8,662	667	119	884,215	
	광주	동부	동구, 북구	223	62,062	5,645	522	126	528,823	
		서부	서구, 남구, 광산구	374	121,490	10,379	903	152	886,951	
	대전	동부	중구, 동구, 대덕구	241	63,280	6,487	575	134	609,847	
		서부	서구, 유성구	317	105,348	9,273	724	137	831,842	
	울산	강남	울주군, 남구	208	61,378	5,262	494	119	524,727	
		강북	중구, 동구, 북구	225	78,416	6,360	557	119	576,609	
	도	경기	동두천양주	동두천시, 양주시	141	41,855	3,449	319	133	363,159
			구리남양주	구리시, 남양주시	294	110,940	8,786	749	220	919,071
안양과천			안양시, 과천시	181	69,841	5,804	491	185	629,244	
군포의왕			군포시, 의왕시	133	41,004	3,602	307	136	416,939	
화성오산			오산시, 화성시	452	178,000	13,342	1,109	259	1,182,877	
광주하남			하남시, 광주시	189	81,232	6,261	492	191	721,577	
강원		속초양양	속초시, 양양군	60	9,898	1,041	153	73	109,270	
충북		괴산증평	괴산군, 증평군	54	5,931	767	139	57	73,719	
충남		논산계룡	논산시, 계룡시	106	18,056	2,049	270	87	156,589	
평균			208	72,978	6,258	596	128	691,835		

출처: 교육통계서비스(2024. 4. 1. 기준), 2024년 정현원통계(2024. 6. 30. 기준), 행정안전부(2024. 3. 31. 기준)

3. 통합교육지원청(37개)의 교육행정 수요(학생) 변화 추이

※ 음영 표시는 연평균 학생 수가 증가한 지역임

(단위: 명)

연번	시도	교육지원청(소재지)	관할구역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증감(%)
1	경기	동두천양주 (동두천)	동두천시	9,672	9,247	8,830	△4.35%
			양주시	29,403	30,822	33,025	6.16%
2	경기	구리남양주 (남양주)	구리시	20,435	19,965	19,269	△2.85%
			남양주시	95,121	93,560	91,671	△1.81%
3	경기	안양과천 (안양)	안양시	61,891	60,467	59,451	△1.97%
			과천시	8,823	9,423	10,390	8.88%
4	경기	군포의왕 (군포)	군포시	28,918	27,848	26,542	△4.11%
			의왕시	15,358	15,043	14,462	△2.92%
5	경기	화성오산 (오산)	화성시	140,636	142,643	144,027	1.21%
			오산시	34,703	34,113	33,973	△1.05%
6	경기	광주하남 (광주)	광주시	39,511	40,035	40,231	0.91%
			하남시	38,968	40,403	41,001	2.61%
7	서울	동부 (동대문구)	동대문구	27,917	27,351	27,045	△1.56%
			중랑구	28,630	27,944	27,084	△2.70%
8	서울	서부 (서대문구)	서대문구	25,884	25,618	24,917	△1.87%
			마포구	30,050	28,945	27,960	△3.48%
			은평구	44,177	42,869	41,913	△2.56%
9	서울	남부 (영등포구)	영등포구	28,903	28,646	27,956	△1.64%
			구로구	36,774	36,041	34,916	△2.53%
			금천구	17,107	16,501	15,967	△3.33%
10	서울	북부 (도봉구)	도봉구	27,976	26,638	25,494	△4.44%
			노원구	62,227	59,171	56,923	△4.26%
11	서울	중부 (종로구)	종로구	17,119	16,008	15,548	△4.59%
			중구	13,954	13,517	13,109	△3.03%
			용산구	15,558	14,909	14,101	△4.68%
12	서울	강남서초 (강남구)	강남구	63,422	62,610	64,972	1.22%
			서초구	45,359	43,766	43,037	△2.56%
13	서울	강동송파 (송파구)	강동구	47,827	47,627	47,683	△0.15%
			송파구	66,935	65,573	64,473	△1.84%
14	서울	강서양천 (양천구)	강서구	53,147	51,495	49,961	△3.00%
			양천구	53,936	52,043	50,954	△2.76%
15	서울	동작관악 (동작구)	관악구	30,727	29,421	27,965	△4.49%
			동작구	30,795	28,935	27,569	△5.24%

연번	시도	교육지원청(소재지)	관할구역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증감(%)
16	서울	성동광진 (성동구)	성동구	20,736	19,753	18,808	△4.65%
			광진구	30,790	29,771	28,858	△3.14%
17	서울	성북강북 (강북구)	성북구	40,701	39,200	37,685	△3.71%
			강북구	21,422	20,957	20,170	△2.92%
18	인천	서부 (서구)	계양구	28,892	27,335	25,784	△5.38%
			서구	74,579	79,033	81,902	4.91%
19	인천	남부 (중구)	중구	23,472	24,039	24,867	2.97%
			미추홀구	37,141	36,051	35,602	△2.07%
			동구	6,833	6,733	6,510	△2.36%
			옹진군	1,119	1,043	937	△8.13%
20	인천	동부 (남동구)	연수구	56,999	56,770	57,439	0.39%
			남동구	60,893	58,821	56,434	△3.66%
21	부산	서부 (서구)	서구	9,475	9,385	9,110	△1.93%
			사하구	29,733	28,929	27,875	△3.12%
			영도구	8,539	8,304	8,088	△2.64%
			중구	3,172	3,035	2,907	△4.18%
22	부산	남부 (남구)	남구	28,571	27,839	27,246	△2.32%
			동구	7,130	6,755	6,867	△1.84%
			부산진구	34,659	34,612	34,516	△0.21%
23	부산	동래 (동래구)	동래구	33,142	32,788	32,544	△0.90%
			금정구	23,367	22,599	22,055	△2.81%
			연제구	17,266	16,964	17,575	0.89%
24	부산	북부 (북구)	북구	26,924	26,044	24,960	△3.65%
			사상구	15,411	14,682	14,319	△3.54%
			강서구	22,637	23,553	23,987	2.98%
25	부산	해운대 (해운대구)	수영구	12,787	12,664	12,638	△0.58%
			해운대구	41,730	40,708	39,627	△2.52%
			기장군	24,526	24,652	24,420	△0.22%
26	대구	동부 (중구)	중구	9,895	10,217	10,879	4.97%
			동구	33,169	32,672	32,165	△1.51%
			수성구	56,078	54,932	54,607	△1.31%
27	대구	서부 (서구)	서구	12,220	11,932	12,519	1.22%
			북구	49,654	47,948	45,984	△3.70%
28	대구	남부 (달서구)	남구	13,836	12,766	12,301	△5.55%
			달서구	67,483	66,009	63,710	△2.80%
29	광주	동부 (동구)	동구	9,734	9,415	9,403	△1.70%
			북구	53,909	53,087	52,659	△1.16%

연번	시도	교육지원청(소재지)	관할구역	2022년	2023년	2024년	연평균증감(%)
30	광주	서부 (서구)	서구	32,035	31,227	30,398	△2.56%
			남구	34,422	33,773	33,038	△2.01%
			광산구	62,607	60,470	58,054	△3.64%
31	대전	동부 (중구)	중구	28,301	27,144	26,350	△3.45%
			동구	22,755	21,545	20,370	△5.24%
			대덕구	17,947	17,288	16,560	△3.86%
32	대전	서부 (서구)	서구	59,404	57,618	56,087	△2.79%
			유성구	50,176	49,476	49,261	△0.91%
33	울산	강남 (남구)	울주군	27,408	26,776	25,789	△2.95%
			남구	37,433	36,293	35,589	△2.46%
34	울산	강북 (북구)	중구	24,002	23,400	23,286	△1.49%
			동구	21,679	21,461	21,342	△0.78%
			북구	34,352	34,286	33,788	△0.82%
35	강원	속초양양 (속시초)	속초시	8,672	8,366	8,107	△3.26%
			양양군	1,940	1,840	1,791	△3.84%
36	충북	괴산증평 (괴산군)	괴산군	2,042	1,995	1,921	△2.96%
			증평군	4,200	4,094	4,010	△2.26%
37	충남	논산계룡 (논산시)	논산시	12,361	11,784	11,363	△4.04%
			계룡시	6,672	6,643	6,693	0.16%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4.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례

※ 아래 날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시행일 기준임.

교육지원청 분리							
지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1995.03.01.				1996.02.22.		
서울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동대 문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청	동대 문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도봉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특별시 성동교육청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도봉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청	도봉구
	서울특별시 성북교육청	강북구	성북구,강북구				
1995.06.01.				1996.02.22.			
부산	부산광역시 동부교육청	부산 진구	부산진구,북구, 사상구,강서구	⇒	부산광역시 동부교육청	부산 진구	부산진구, 연제구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수영구	남구,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청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청	수영구	남구,중구,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청	해운 대구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청	달서구	서구,남구, 북구,달서구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청	서구	서구,북구
대구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청	달서구	서구,남구, 북구,달서구	⇒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청	달서구	남구,달서구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중구	중구,남구, 동구,옹진군
인천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중구	중구,남구, 연수구, 남동구,옹진군	⇒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	중구	중구,남구, 동구,옹진군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남동구	연수구, 남동구	
2001.01.29.				2004.01.29.			
인천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부평구	부평구, 계양구,서구	⇒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	부평구	부평구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청		서구	계양구,서구	
경기	경기도 안산교육청	안산시	안산시, 시흥시	⇒	경기도 안산교육청	안산시	안산시
			경기도 시흥교육청		시흥시	시흥시	
교육지원청 개편(신설)							
지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명칭	위치	관할구역
	1995.01.01.				1995.03.01.		
대구				⇒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청	남구	달성군
인천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청	강화군	강화군